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이용 안내서



사회복지법인운정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 순 서

- 인사말	1
-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연혁	2
-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소개	3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4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5
- 운영규정 개요	6
- 급여서비스 안내	7
- 일일 생활시간표	9
- 종사자 근무 체계	10
- 시설 비용 및 비급여 항목	10
- 배상책임 보험 안내 및 계약의사	11
- 2018년 평가 결과	12
- 코로나19 대응현황	12
- 활동 사진 모음	13
- 후원 및 자원 봉사 안내	14
- 노인인권보호 지침	16



● 인사말

어르신들의 더 행복한 세상!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은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생활과 기능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5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상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님을 봉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어르신을 보호하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저희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춤형을 입혀드리듯이, 어르신의 상태를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의 효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정이 운영하는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과 나눔을 함께 실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님, 그리고 늘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환경제공과 사랑이 넘치는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원장

● 연혁

2010

- 2.18 국가보조금 수행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준공허가
- 2.22 상주적십자병원과 의료 협약
- 4.3 노인전문요양원 운정골드에이지 준공식
- 5.11 노인전문요양원 운정골드에이지 개원

2011

- 2.22 국가보조금 수행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준공허가
- 7.8 소규모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선정

2016

- 6.2 공검면 "찾아가는 주민 종합서비스" 선정
- 6.16 가톨릭 상지대학교 산학 협력 체결
- 6.16 상지여고 MOU 체결

2017

- 2.16 공검면 노인임원회 방문
- 7.14 공검보건지소 "찾아가는 OK서비스" 행사
- 10.3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 12.4 우수직원 건강보험공단 시상

2018

- 7.12 장기근속자 표창장 수여
- 7.16 일학습병행제 실시

2019

- 12.19 공동모금회 차 치유 프로그램 실시

●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소개**

기관명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설치일자	2010. 05. 11.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80명									
대표자	조 옥 희							협력의료기관	적십자병원									
홈페이지	http://www.woonjung.kr/							전화번호	054) 536-1680									
E-mail	wjgoldage@hanmail.net							팩스	054) 536-1681									
주 소	경북 상주시 공검면 화동 1길 94-66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2,000 원 (1식)										
	상급침실 비용							없음										
시설규모	신관(지상 2층)							건물면적 858.00㎡, 연면적 3,359㎡										
	구관(지상 2층)							건물면적 449.30㎡, 연면적 1,189㎡										
시설 현황	지하1층		원장실, 사무실, 물리&작업치료실, 자원봉사자실,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1층		간호(의무)실, 특별침실, 생활실 1호 ~ 10호, 이미용실, 탈의실, 목욕실, 요양보호사실. 린넨실, 세면장, 화장실.															
	2층		11호 ~ 22호, 중앙 홀(휴게 & 프로그램) , 요양보호사실, 린넨실, 세면장, 화장실.															
	3층		식당, 상담실, 프로그램실, 세탁실, 재봉실, 하늘정원, 영양사실, 조리실, 저온창고, 피난구조대. 화장실.															
구분	원장실	사무실	특별침실	침실	4인실	2인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조리실	식당	복도	세면장 / 화장실	세탁실	재봉실
시설 (수량)	1	1	1	22	18	4	2	1	1	1	1	1	1	1	5	15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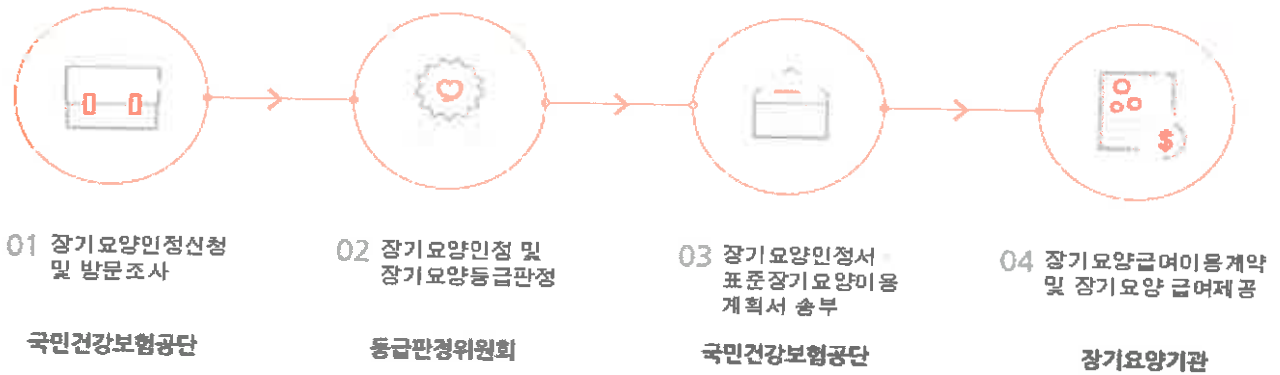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본인부담율은 최하 8% ~ 최대 20% (수급자 소득에 따라 경감 받음)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율 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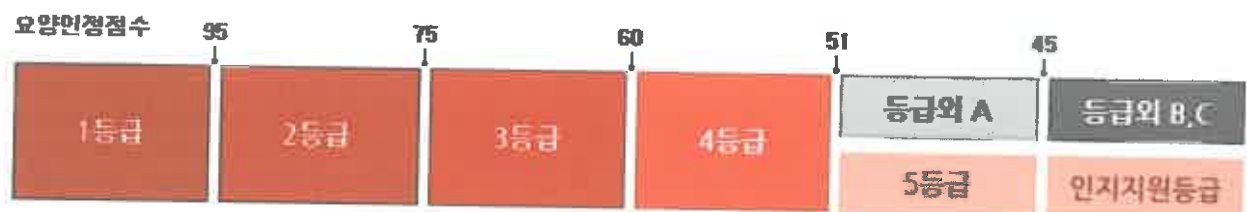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 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 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운영규정 개요

- 총칙
- 입소자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 · 인사 · 노무 · 복무 · 재무에 관한 사항
- 후원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무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차량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인사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임금에 관한 사항
- 퇴직 · 해고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외모관리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1)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 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들)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2) 병원 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기능 기능향상 프로그램	1)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 생활동작훈련
	3.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4. 여가, 정서지원 프로그램	1)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건강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구축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계약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사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임종관리	1) 임종간호	1)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시 간	내 용
06:00~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준비
07:00~08:30	아침 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08:30~10:30	기본 건강체크 및 목욕
10:30~11:30	개인 활동
11:30~13:00	점심 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13:00~14:00	개인 활동, 휴식 말벗 지원
14:00~15:00	인지기능향상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15:00~16:30	개인 활동
16:30~18:00	저녁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18:00~21:00	자유시간(음악, 말벗, TV)
21:00 ~	취침
22:00~06:00	야간점검 및 라운딩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여가프로그램 1그룹 (30분) 인지프로그램 A그룹 (30분)	인지프로그램 B그룹 (30분)			여가프로그램 2그룹 (30분)	여가프로그램 1그룹 (30분) 인지프로그램 C그룹 (30분)
▶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 ▶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 명절 함께 보내기, 정월대보름, 크리스마스 등 절기 행사 ▶ 특별식 제공					

● 종사자 근무 체계 (2022. 6월 기준)

직종별 직원 배치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계약의사	물리(작업) 치료사	위생원
	1	1	3	1	1	1
	간호(조무) 사	영양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조리원	시설관리원
	3	1	1	33	4	1
평균 근무자	평일주간 (09:00~18:00)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전 인력-20~24명 내외 (근무표 참조)				
	평일야간 (18:00~익일09:00)	요양보호자중 야간근무자 - 5~6명 내외 (근무표참조)				
	휴일주간 (09:00~18:00)	사무실 근무자, 간호팀, 조리원, 요양보호사 - 20명 내외 (근무표참조)				
	휴일야간 (18:00~익일09:00)	요양보호사 중 야간근무자 - 5~6명 내외 (근무표참조)				

● 시설 비용 및 비급여 항목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2022. 01. 01. 현재 (단위:원)

구 분	단 위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전문 요양시설	1일당 (30일 기준)	74,850 (2,245,500)	69,450 (2,083,500)	64,040 (1,921,200)

(단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급여(30일 기준)					
등급	월 한도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 수급권자
1등급	2,245,500	449,100	269,460	179,640	면제
2등급	2,083,500	416,700	250,020	166,680	
3/4/5등급	1,921,200	384,240	230,540	153,690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 40)	감경 8%, 12%

○ 비급여 항목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1일 6,000원(30일 기준 180,000원)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는 추가로 청구하지 않음.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배상책임 보험 안내 및 계약의사

○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사고당 배상 책임 3억원 1인당 사고 배상 책임 1억원5천 대물 사고당 배상 책임 10억원	2021. 05. 17 ~ 2031. 05. 17. (10년 갱신)

○ 계약의사 (상주적십자병원)

본인부담율	20%	12%	8%
금액(2회 진료시 비용)	4,700	2,820	1,880

● 2018년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 B

● 코로나 대응 현황

<<시설 종사자의 원내 접촉 및 이동 최소화와 입소자의 방역관리와 건강관리를 통해 코로나19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관련	자원봉사자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종사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별 담당할 입소자 지정, 담당 외 입소자 접촉 최소화 - 원내에서 종사자 이동 경로 최소화를 위한 동선 마련 - 화장실, 식당 등 공용공간 입소자와 분리 사용 또는 시차 사용 - 2.5단계 이상일 경우 종사자가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타지역 여행 등 계획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게 사전 보고, 시설장은 개인 방역 및 거리두기 실천 등 교육을 통해 위험 관리 				
입소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에서 다른 입소자와 접촉 최소화 - 매일 발열, 호흡기 증상, 미각, 후각 기능 여부 체크 - 병원 진료 최대한 자제 				
기관내 방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자재 운반, 내부 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외부인이 시설 내부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 - 내부 행사는 자제하되, 거리두기를 전제로 실시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음식 섭취는 강당 등 행사장소에서는 금지 - 겨울철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하는 경우 실내에 오염된 공기 전파가 용이하므로 주기적인 환기 및 시설 내 소독강화 				
모니터링 및 진단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과 시청 가족복지과에 매일 코로나19 일일상황 등록 - 진단검사 :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간호조무사가 검체 채취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체 검체 채취 후 보건소 제출) 				

● 활동사진 모음

〈프로그램 사진〉



인지향상지원



여가지원



연말행사



산책

<프로그램 사진>



나들이



어버이날 행사



가족지지-개별 생신잔치



명절 함께 보내기

● 후원 안내

▶ 계좌번호 : 농협. 1227-01-000990

(예금주 :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 자원봉사 안내 (신청은 기관전화 : 054-536-1680)



자원봉사, 나와 이웃을 자라게 하는 기쁨입니다.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의료봉사	한방 진료, 수지침 등
목욕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커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문화공연, 노래, 레크레이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전화
1577-1000

국립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절차

대한민국 아들·딸의 이름으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돕겠습니다.

01
신청

클릭

02
인정조사

클릭

03
등급판정

클릭

04
이용계획서

클릭

05
결과통지

클릭

06
서비스이용

클릭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의 개념

-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3)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권리선언

1) 노인인권 보호지침

-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⑧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⑪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인권 권리선언

-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 ②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이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 ①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 ②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노인에 대한 소극적인 방치 노인을 이용한 구걸 행위도 노인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2) 노인학대의 원인

<p>◎ 학대 행위자 특성요인</p> <p>40-50대가 주로 많음, 경제적 어려움 비평적이고 참지 못하는 성격 스트레스와 부담감, 부양 경험 부족</p>	<p>사회 문화적 맥락</p>	<p>◎ 노인(피해자)의 특성요인</p> <p>연령이 높음, 건강이 나쁨, 의존성이 높음. 고립됨, 지나친 관대함 또는 기대 높음.</p>
<p>◎ 상황적 요인</p> <p>노인과 학대행위자 동거 상태 부양부담과 기대수준 불일치, 가족기능저하, 가족 결속력 약화, 가족의 고립됨. 가족 지원 체계 없음.</p>		<p>◎사회·문화적 요인</p> <p>노인차별 문화, 강한 가족주의, 사회제도 및 서비스의 부족</p>

3) 노인학대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 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언어·정서 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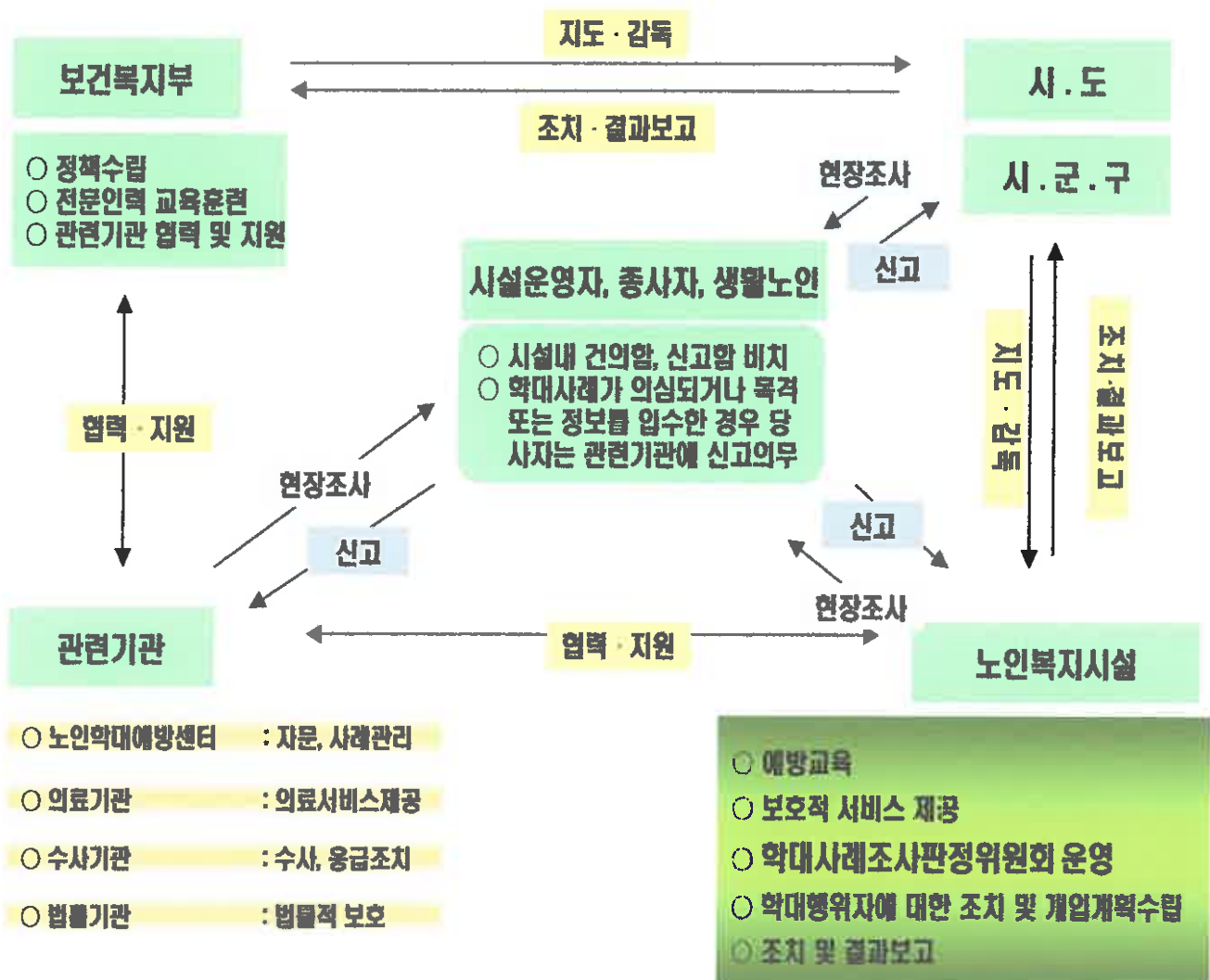
4.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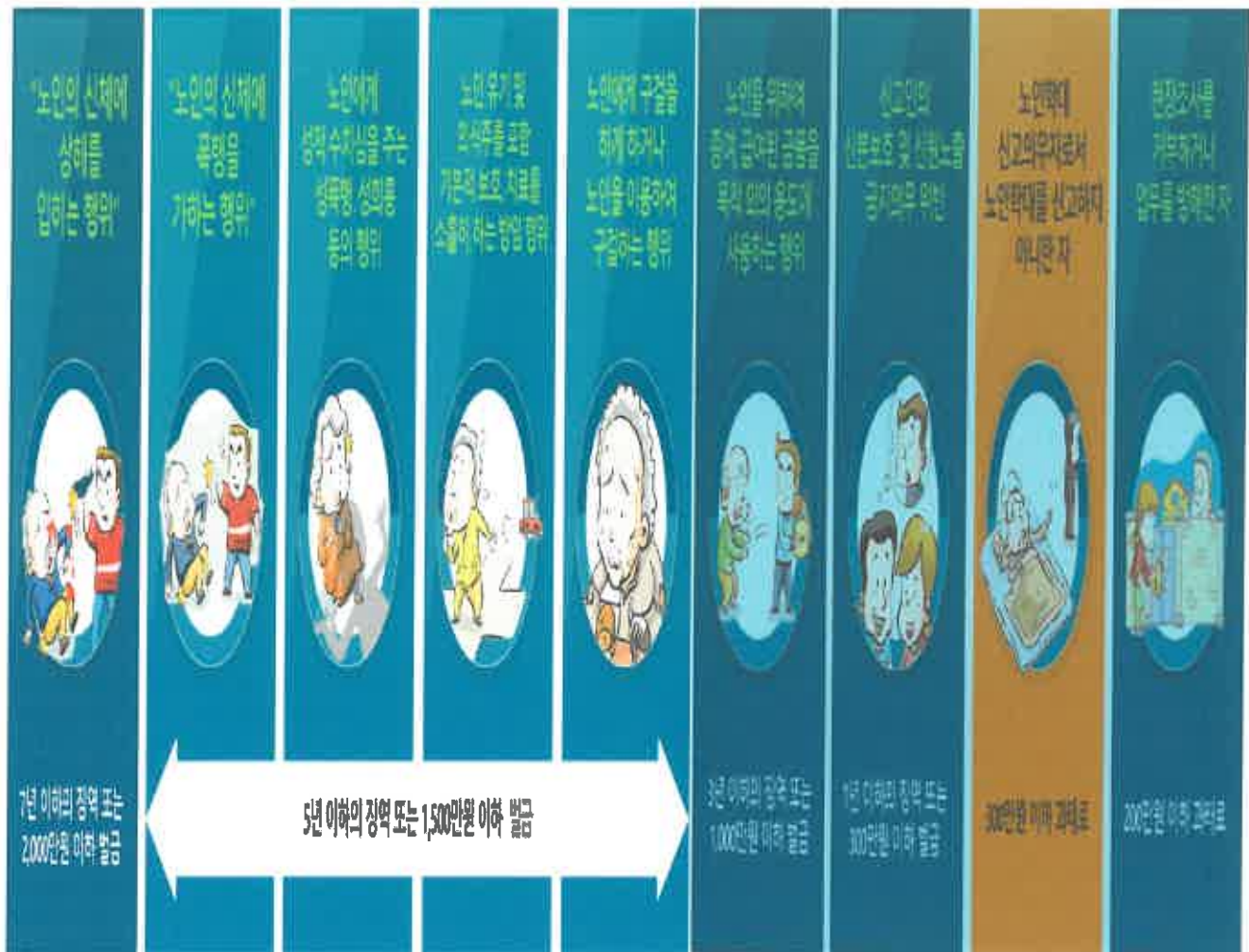
- (1)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2)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3)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5)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 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사례 처리절차



3) 노인학대 처벌규정



4)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